

#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(임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53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2. 16.

발의자 : 임미애 · 김문수 · 박용갑

박홍근 · 박지혜 · 조계원

전진숙 · 채현일 · 문금주

최민희 · 이연희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 · 육성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·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있음.

그러나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대상을 제조 · 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(DNA)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에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(유전자변형생물체의 원료 사용 여부)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기존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· 가공한 식품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하여 제조 · 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(DNA)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 및 보호하고자 하는

것임.

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·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. 단,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의 경우 그 기준을 유전자변형 기술을 사용한 원재료의 혼입률이 1,000분의 9를 넘지 않도록 하여 EU·호주 등의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3 신설).

##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등을”을 “등(이하 “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”이라 한다)을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 이하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(이하 “비의도적혼입식품등”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장에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3(비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) ①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·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비의도적혼입식품등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다. 다만, 비의도적혼입식품등에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병기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는 자,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의2의 개정규정  
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 
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의2(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·육성된 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 <u>등을</u> 원재료로 하여 제조·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(이하 “유전자변형식품등”이라 한다)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 <u>다만, 제조·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(DNA, Deoxyribonucleic acid)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.</u></p> <p>1. · 2. (생 략)          ② · ③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2조의2(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) ①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<u>등(이하 “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등”이라 한다)을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<u>다만,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9 이하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(이하 “비의도적혼입식품등”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u>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의3(비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) ①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·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비의도적혼입식품등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</p>

표시를 할 수 있다. 다만, 비의  
도적 혼입식품등에는 유전자변  
형농축수산물등이 원재료에서  
차지하는 비율을 병기하여야  
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할 수  
있는 자,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 
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  
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.